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2

제출연월일: 2018. 8. 17.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2017. 10. 24.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미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7. 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	
로에 노상주차장을 <u>설치할 수</u>	<u>설</u> 치하고자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
	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u>야 한다.</u>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	<u><삭 제></u>
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u><삭 제></u>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	
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단순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는 경우로 비용 발생 부분 없음

4. 작성자

○ 교통지도과 행정7급 김경희 (☎02-2286-5713)

< 관계법규>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 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4.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18. 8. 17. /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8. 20.

다. 상정일자: 2018. 8. 29.

(제24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나. 제안이유

2017. 10. 24.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미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차장법」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7. 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노 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미리 경찰 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하 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6년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 택 화재,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경남 밀 양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 지 못해 피해가 커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볼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 안으로 사료됩니다.

-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